◉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2-17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.

2022년 03월 0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1. 근거법령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 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- 2. 행정처분대상 : 그린월드○○○ 주식회사 등 8명
- 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- 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- (2 02 6735 8130 / FAX 02 6735 8144 / E-mail : hwangyj84@korea.kr)

행정처분 대상자

l							
번호	대상자	주민(법인) 번호	고지주소	법령	과태료	스팸번호(UR	광고
				위반사항	금액(원)	L)	내용
1	그린월드OOO 주식회사	110111-479	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18,000,000	031-338-***	상품 할인
2	위너스OO 주식회사	110111-766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2길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3,750,000	010-7907-***	주식
3	오앤제이마〇〇 〇〇 주식회사	110111-781	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10-5433-***	마케팅
4	스마트리딩파O	110111-788	서울시 영등포구	정보통신망	7,500,000	010-2191-***	주식

	00	***	당산동4가 및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	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		
5	에스비인베스〇	110111-760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3,750,000	010-2806-***	주식
6	희망〇〇 주식회사	120111-103	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15,000,000	032-710-***	주식
7	김〇윤	900509-1**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15번길 및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36번길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	3,750,000	010-3301-***	마케팅
8	김〇겸	900424-1**	경기도 수원시 세권로 및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3,750,000	010-2495-***	주식